

LH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격완화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9블록(울주군 범서읍 소재)
 ■ 공급대상 : A-9블록 1,252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86세대 (전용면적 55㎡ 778세대, 59㎡ 8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합니다.** (단 1세대 2인 이상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3.04.06.)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선택이 불가능하며, 추가선택품목 일부에 한해 선택가능합니다.
- A-9블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단,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조성중인 지구로 A-9블록 입주 시에 대기권 통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 1,252세대 중 835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1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07(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3.04.06.)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835세대) 및 행복주택(417세대)이 혼합되어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공공분양)의 당첨동호는 미계약 동호(786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청약신청 전 사이버건본주택(www.ulsanshinwon.com) 및 팸플릿을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및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23.09.04(월)~'23.09.21(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을 중단 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에 한하여 관람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고객님은 사이버건본주택(www.ulsanshinwon.com)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055.9300A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안내

구분	장소	관람시간	☎ 문의전화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89-1	'23.09.04(월)~'23.09.21(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관람가능	052)711-0088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LH' 단독 또는 'LH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신청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대금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3년)

공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전자	현장
'23.09.07(목)	'23.09.19(화)~09.21(목) (10:00~17:00)	'23.10.05(목) (16:00)	'23.10.11(수)~10.13(금) (10:00~17:00)	'23.11.13(월)~11.14(화) (10:00~17:00)	'23.11.20(월)~11.21(화) (10:00~17:00)	'23.11.22(수)~11.23(목)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LH울산사업단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울산사업단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1길 24-6, LH울산사업단 1층 보상판매부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함이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11.20(월)~2023.11.21(화) 10:00~17: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6% 고정금리('23.08.30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의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대출 70% 실행시			대출 60% 실행시			대출 50% 실행시			대출 40% 실행시			대출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LTV 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금융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정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 A-9블록 1,252세대 중 잔여세대 786세대[전용면적 55㎡, 59㎡]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공급 공공분양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행복주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1,252	49	786	417			
A-9	055.9300A	55A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885	37	558	290	24	21	
		55AH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55AS (주거약자형)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055.9700B	55B	확장	55.9700	24.1534	6.5507	40.1535	126.8276	56.7936	224	1	150	73	24	7	
		55BH	확장	55.9700	24.1534	6.5507	40.1535	126.8276	56.7936							
	055.9300C	55C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106	3	70	33	20	2	
	059.9500T	59T1	확장	59.9500	25.8709	7.0166	43.0088	135.8463	60.8322	7	2	5	-	1	5	
	059.8500T	59T2	확장	59.8500	25.8278	7.0049	42.9370	135.6197	60.7308	2	-	2	-	1	2	
059.7700T	59T3	확장	59.7700	25.7933	6.9955	42.8796	135.4384	60.6496	7	6	1	-	2	-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세차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A/AH, B/BH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과 가정어린이집(913동 101호)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별도)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10%)	입주시(90%)	
055.9300A	55A 55AH	1층	기본형	257,040	25,700	176,340	55,000
		2층	기본형	259,770	25,900	178,870	55,000
		3층	기본형	265,240	26,500	183,740	55,000
		4층	기본형	270,710	27,000	188,71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273,450	27,300	191,150	55,000
055.9700B	55B 55BH	1층	기본형	257,220	25,700	176,520	55,000
		2층	기본형	259,950	25,900	179,050	55,000
		3층	기본형	265,430	26,500	183,930	55,000
		4층	기본형	270,900	27,000	188,90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273,640	27,300	191,340	55,000
055.9300C	55C	1층	기본형	257,040	25,700	176,340	55,000
		2층	기본형	259,770	25,900	178,870	55,000
		3층	기본형	265,240	26,500	183,740	55,000
		4층	기본형	270,710	27,000	188,71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273,450	27,300	191,150	55,000
059.9500T	59T1	1층	기본형	293,360	29,300	209,060	55,000
059.8500T	59T2	1층	기본형	292,870	29,200	208,670	55,000
059.7700T	59T3	2층	기본형	292,480	29,200	208,280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자금 안내>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자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4.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안내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형(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침실3	주방/식당	욕실/드레스룸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055.9300A (55A,AH)	기본공사비(A)	66,300	22,089	771	14,220	10,288	18,663	269	1,000천원	5,321천원
	확장공사비(B)	72,621	22,562	1,843	14,672	10,739	22,254	550		
	계약자부담액(B-A)	6,321	473	1,073	452	451	3,591	281		
055.9700B (55B,BH)	기본공사비(A)	66,219	20,775	9,373	15,698	11,352	3,485	5,536	1,000천원	5,281천원
	확장공사비(B)	72,500	21,506	10,700	16,383	11,971	6,240	5,700		
	계약자부담액(B-A)	6,281	731	1,328	684	619	2,755	164		
055.9300C (55C)	기본공사비(A)	71,440	23,148	771	21,281	6,435	13,480	6,326	1,000천원	6,000천원
	확장공사비(B)	78,440	23,619	1,843	22,187	6,770	17,658	6,364		
	계약자부담액(B-A)	7,000	470	1,073	906	335	4,178	38		

059.9500T (59T1)	기본공사비(A)	77,660	12,342	10,998	11,043	17,528	23,447	2,301	1,000천원	7,601천원
	확장공사비(B)	86,260	12,772	11,975	11,454	18,041	29,682	2,337		
	계약자부담액(B-A)	8,601	430	977	411	512	6,235	36		
059.8500T (59T2)	기본공사비(A)	85,178	34,620	814	12,139	10,503	15,339	11,764	1,000천원	7,721천원
	확장공사비(B)	93,899	35,885	1,635	11,797	11,835	20,709	12,037		
	계약자부담액(B-A)	8,721	1,266	822	-342	1,331	5,371	274		
059.7700T (59T3)	기본공사비(A)	79,189	13,675	18,993	10,668	10,566	20,220	5,068	1,000천원	7,681천원
	확장공사비(B)	87,870	14,337	20,819	11,236	11,131	25,114	5,232		
	계약자부담액(B-A)	8,681	663	1,826	569	565	4,895	164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기본형	선택시 납부조건			비고
	공간선택유형	선택품목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300A	1-1 공간통합형	침실2 + 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제공			
	1-2 공간확장형	침실2 + 드레스룸+복도팬트라		886	88	798	
055.9700B	1-1 공간통합형	침실2 + 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제공			
	1-2 공간확장형	침실2 + 드레스룸+복도팬트라		886	88	798	
055.9300C	1-1 공간통합형	침실2 + 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제공			
059.9500T	1-1 공간통합형	거실 + 침실2 통합	거실/침실2 분리	선택 시 무상제공			
059.7700T	1-1 공간통합형	거실 + 침실3 통합	거실/침실3 분리	선택 시 무상제공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이 불가하여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단, 중문, 침실2,3 불박이장(일부), 마감재(일부), 톱카펫의 경우 선택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펌플렛,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건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유형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300A (55A,55AF)	현관	1-1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1-1 아일랜드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1,343	135	1,208	* 1-1, 1-2, 1-3 중 1개만 선택가능 * 1-1 선택 시, 인조대리석(MMA)마감(주방상판 및 아일랜드장상판), 주방벽 타일 시공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아일랜드장상판)
		1-2 빌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아일랜드장(벽, 가구판넬포함)+시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3,056	305	2,751	
		1-3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홀바))+아일랜드장(벽, 가구판넬포함)+시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주방벽 타일시공	4,264	427	3,837	
	침실1	1-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1,916	191	1,725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1-2 불박이가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3,971	397	3,574		
	침실2/알파룸	1-1 불박이장(여달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1-2 불박이장(슬라이딩형)	2,537	253	2,284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1-3 드레스룸(시스템가구), 복도팬트라(시스템가구)	1,491	149	1,342	* 1-2 공간확장형에만 설치가능	
	거실/복도	1-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소파뒷벽-시트판넬	거실아트월-포세린타일/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708	170	1,538	* 기본형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1-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소파뒷벽-시트판넬		1,708	170	1,538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1-3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소파뒷벽-시트판넬, 복도벽-시트판넬 및 가구판넬		1,741	174	1,567	* 1-2 공간확장형(침실2+드레스룸+복도팬트라)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시스템 에어컨	1-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냉매매립배관(거실+침실1) 제공	3,800	380	3,42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매립배관(가분형) 미설치
		1-2 거실+침실1+침실2 시스템에어컨	5,600	560	5,040		
주방가전	1-1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2구+하아라아트1구)	가스쿡탑(기본3구)	400	40	360		
조명	1-1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1-1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055.9700B (55B,55B+)	현관	■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 1-1 아일랜드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1,343	135	1,208	※ 1-1, 1-2, 1-3 중 1개만 선택가능 ※ 1-1 선택 시, 인조대리석(MMA)마감(주방상판 및 아일랜드장상판), 주방벽 타일시공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아일랜드장상판)
		■ 1-2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아일랜드장(벽, 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3,515	—352	—3,163	
		■ 1-3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흡배))+아일랜드장(벽, 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4,722	-472	4,250	
	침실1	■ 1-1 드레스룸-불박이거구(화장대포함)	미설치	2,127	-212	1,915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 1-2 불박이거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3,491	-349	-3,142	
	침실2 /알파룸	■ 1-1 불박이장(여닫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2 불박이장(슬라이딩형)		2,545	-255	-2,290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 1-3 드레스룸(시스템거구), 복도펜트리(시스템거구)		1,491	-149	-1,342	※ 1-2 공간확장형에만 설치가능
	거실 /복도	■ 1-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소파뒷벽-시트판넬	거실아트월 -포세린타일 /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733	174	1,559	※ 기본형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 1-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소파뒷벽-시트판넬		1,733		174	1,559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 1-3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소파뒷벽-시트판넬, 복도벽-시트판넬 및 가구판넬		1,765		177	1,588	※ 1-2 공간확장형(침실2+드레스룸+복도펜트리)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시스템 에어컨	■ 1-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제공	3,800	380	3,42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배관(기본형) 미설치	
	■ 1-2 거실+침실1+침실2 시스템에어컨		5,600	560	5,040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400	40	360		
조명	■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055.9300C (55C)	현관	■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 1-1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1,802	181	1,621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 1-2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흡배))+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3,009	-301	-2,708	
	침실1	■ 1-1 드레스룸-불박이거구(화장대포함)	미설치	2,128	213	1,915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 1-2 불박이거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4,041	-404	-3,637	
	침실2 /알파룸	■ 1-1 불박이장(여닫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2 불박이장(슬라이딩형)		2,017	202	-1,815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거실 /복도	■ 1-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소파뒷벽-시트판넬	거실아트월 -포세린타일 /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773	177	1,596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소파뒷벽-시트판넬		1,773	-177	-1,596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설치가능
	시스템 에어컨	■ 1-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제공	3,800	380	3,42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배관(기본형) 미설치
■ 1-2 거실+침실1+침실2 시스템에어컨		5,600		560	5,040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400	40	360		
조명	■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059.9500T (59T1)	현관	■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 1-1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1,900	-190	1,710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 1-2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흡배))+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3,100	310	-2,790	
	침실1	■ 1-1 드레스룸-불박이거구(화장대포함)	미설치	2,568	256	-2,312	※ 1-1, 1-2 중 1개만 선택가능
		■ 1-2 불박이거구[침실장+드레스룸(화장대 포함)]		4,762	-476	4,286	
	침실2	■ 불박이장(여닫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침실3	■ 불박이장(슬라이딩형)	미설치	2,471	247	2,224	
거실 /복도	■ 1-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복도벽일부-시트판넬	거실아트월 -포세린타일 /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539	154	1,385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 /복도벽일부-시트판넬		1,563	156	1,407	※ 1-1 공간통합형(거실+침실2-통합)의 경우에만 설치가능	

	시스템 에어컨	9-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9-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시스템에어컨	냉매리튬배관(거실+침실1) 제공	3,800 7,000	380 700	3,420 6,30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 리튬배관(가분형) 미설치
	주방가전	9 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구+하이러아트1구)	가스쿠킹탑(기본3구)	400	40	360	
	조명	10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11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059.8500T (59T2)	현관	12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12-1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1,900	190	1,710	* 12-1, 12-2 중 1개만 선택가능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12-2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3,100	310	2,790	
	침실1	13-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2,254	226	2,028	* 13-1, 13-2 중 1개만 선택가능
		13-2 불박이 가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4,000	400	3,600	
	침실3	14 불박이장(여닫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거실/복도	15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복도벽 일부-시트판넬	거실아트월-포세린타일/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588	159	1,429	
	시스템 에어컨	16-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16-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시스템에어컨	냉매리튬배관(거실+침실1) 제공	3,800 7,000	380 700	3,420 6,30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 리튬배관(가분형) 미설치
	주방가전	17 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구+하이러아트1구)	가스쿠킹탑(기본3구)	400	40	360	
	조명	18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11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059.7700T (59T3)	현관	12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1,040	104	936	* 중문 선택시 현관 창고쪽 벽면 가구판넬 시공
	주방	12-1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1,900	190	1,710	* 12-1, 12-2 중 1개만 선택가능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12-2 커튼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3,100	310	2,790	
	침실1	14-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2,242	-224	-2,018	* 14-1, 14-2 중 1개만 선택가능
		14-2 불박이 가구[침실장+드레스룸(화장대 포함)]		4,811	481	4,330	
	침실2	15 불박이장(여닫이형)	미설치	1,217	122	1,095	
	거실/복도	16-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복도벽 일부-시트판넬	거실아트월-포세린타일/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1,475	148	1,327	* 공간융선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16-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타일/복도벽 일부-시트판넬		1,475	-148	1,327	* 16-1 공간통합형(거실+침실3-통합)의 경우에만 설치가능
	시스템 에어컨	17-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시스템에어컨	냉매리튬배관(거실+침실1) 제공	3,800 7,000	380 700	3,420 6,300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 리튬배관(가분형) 미설치
	주방가전	18 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구+하이러아트1구)	가스쿠킹탑(기본3구)	400	40	360	
조명	19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490	49	441		
바닥마감	11 톱카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제공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보증(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주택도시보증(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3.10.05.)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선정 기준

- 주택소유 선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4.09.07.)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IV 신청 시 확인사항(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게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등] 처리됩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5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 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보상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3.09.19(화) 10:00 ~ 09.21(목)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24시간)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체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9.21(목)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3.09.19(화) 10:00 ~ 2023.09.21(목) 17:00**

-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Ⅶ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 10월 05일(목) 13:3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당첨자의 동·호수,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울산광역시 중구 중가 17길 24-6 1층 보상판매부, 연락처 : 052-711-0037~8)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전자	현장
'23.10.05(목) 16: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3.10.11(수)~10.13(금) (10:00~17:00) LH울산사업단	'23.11.13(화)~11.14(화) (10:00~17: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3.11.20(월)~11.21(화) (10:00~17: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23.11.22(수)~'23.11.23(목) (10:00~16:00) LH울산사업단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3.10.11~2023.10.13)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안내) 공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③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본인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안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여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세대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 + 선택사양품금액 10%(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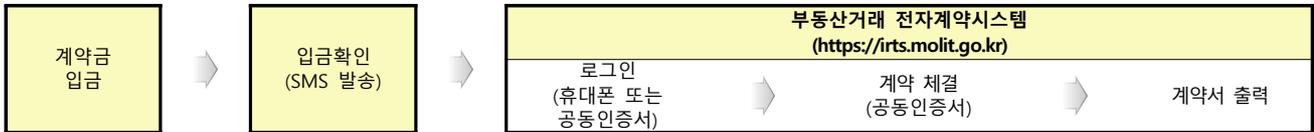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담청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사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계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 및 선택시상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보상판매부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공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적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 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생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거 실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기 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현장 계약체결기간 (2023.11.22(수)~11.23(목))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마감재, AI아파트 서비스,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8.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9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05-82-11744)	[대표업체] (주)티건설 (211-88-79240) [공동이행] 주식회사 시티 외 3개사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외 4개사

6.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89-1
- 오시는길
 - (LH2단지, 호반베르디움) : 마을버스 12번
 - (함월고등학교) : 214, 408, 431
- 운영기간 : 공고일 ~ 청약접수일까지 ('23.09.04(월)~'23.09.21(목))
 - 운영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관람 가능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주택전시관 운영 변동 가능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www.울산신혼희망타운.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울산다운2 A-9블록 주택전시관 : 052-711-0088 (평일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2023. 9. 7.

LH 부산울산지역본부